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20나3536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김성진

피고, 항소인 A

변 론 종 결 2021. 4. 29.

판 결 선 고 2021. 5. 20.

제1 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가단152217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9 지분에 관하여 2015. 8. 1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7,011,60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4,682,7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예비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G카드 등 금융기관들은 B와 자동차할부금융거래약정 등을 체결하고 B에게 대출을 실시하였는데, B가 그 각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연체하자 C 유한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에게 자신들의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를 양수한 C는 B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소5179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6. 27.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후 C는 B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12683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4. 20. “채무자(B)는 채권자(C)에게 23,369,635원 및 그 중 6,071,600원에 대하여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6. 5. 11. 확정되었다.

다. C는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따른 B에 대한 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B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9. 11. 22. 기준 원고가 C로부터 양수한 B에 대한 채권의 원리금은 합계 27,011,603원이다.

마. B의 부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5. 8. 17. 사망하자,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B 및 H, I, J, K, L, M, N 등 공동상속인들(피고의 법정상속분 3/19, B 등 나머지 8인의 법정상속분 각 2/19)은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그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2015. 9.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B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에 대하여 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2/19(이하 '이 사건 상속지분'이라 한다)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사.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18. 3. 19.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L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2014. 9. 26.자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현 IBK기업은행), 채권최고액 144,000,000원, 채무자 L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노원구청, O기관,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인 2019. 11. 26. 비로소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는바(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1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루어진 사실과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로부터 양수한 B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B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B가 C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상속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1)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나, 목적물에 관하여 사해행위 이전부터 설정되어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 이후에 피담보채무의 변제 등으로 말소되거나, 사해행위 이후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새로이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인데(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4319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가진 후에 주식회사 E이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새로이 취득하고, 기존의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현 IBK기업은행)의 채권최고액 14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20. 4. 17. 기준 시가가 410,000,00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중소기업은행(현 IBK기업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이 12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심 변론종결일인 2021. 4. 29.의 시가도 같은 액수 정도일 것으로 추인되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 2/19의 공동담보가액은 30,526,315원 $[(410,000,000원 - 120,000,000원) \times 2/19]$, 원 미만 버림]이다.

3) 당심 변론종결일 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1. 22.까지의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이 27,011,603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1).

4)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상속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위 상속지분의 공동담보가액 30,526,315원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27,011,603원 중 더 작은 금액인 27,011,60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7,011,6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천석, 판사 김영환, 판사 조진용

목록(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콘크리트 평지붕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 78735.3㎡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 2399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8층 호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9.94㎡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1,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102733.30분의 45.40

끝.

1) 피고는,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의 피보전채권액 한도 내로 제한되므로, 원고가 구하는 2019. 11. 22.이 아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를 기준으로 위 채권의 원리금이 계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양수금 채권의 원금은 6,071,600원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부터 당시심 변론종결시까지 변동이 없으며 다만 위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이 추가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